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강승규 · 김소희 · 임이자
구자근 · 신동욱 · 김미애
김기현 · 성일종 · 강명구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위권 행사, 구상·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,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

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1항).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중 “국민건강보험공단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그 밖에”를 “국민건강보험공단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”로, “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, 금액,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
2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, 금액,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
3.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, 금액 및 납세지
4.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
5.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금 및 가산금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자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)	제58조(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)
① 공사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 금공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<u>국민건강보험공단</u> 및 <u>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</u> <u>른 근로복지공단, 그 밖에 대통</u> <u>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</u> <u>대하여 제53조제1항(제3호는</u> <u>제외한다) 또는 제2항에 따른</u> <u>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</u> <u>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</u> <u>있다.</u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민건강보험공단,</u> <u>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</u> <u>른 근로복지공단, 「가상자산</u> <u>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</u> <u>업자 및 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인</u> <u>적 사항과 사용 목적을 적은</u> <u>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및</u>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</u> <u>각 호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</u> <u>할 수 있다.</u> 1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과세대 <u>상 소득의 종류, 금액, 원천징</u> <u>수의무자 및 납세지</u>
<신 설>	

<u><신 설></u>	2. 「 <u>상속세 및 증여세법</u> 」에 따른 <u>과세대상 재산의 종류,</u> <u>금액, 상속개시일 및 상속재</u> <u>산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</u>
<u><신 설></u>	3. 「 <u>지방세법</u> 」에 따른 <u>과세대</u> <u>상 재산의 종류, 금액 및 납</u> <u>세지</u>
<u><신 설></u>	4. 「 <u>부가가치세법</u> 」에 따른 <u>사</u> <u>업자등록자료</u>
<u><신 설></u>	5. 「 <u>국세기본법</u> 」, 「 <u>관세법</u> 」, 「 <u>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</u> <u>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</u> 」에 따라 <u>납세자에게 지급될 환급</u> <u>금 및 가산금</u>
<u><신 설></u>	6. 그 밖에 <u>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과세자료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